건설업등록수첩



경 기 도

주 의 사 항

1. 본 수첩은 입찰시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 합니다.

2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 및 그 상대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3. 본 수첩의 기재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건 설 업 등 록 수 첩

업 종	토목건축공사업	등록번호	10-0560
상 호	(주)한울건설		
대 표 자	장원근		
영업소재지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85, 태연빌딩 3층 (호매실동)		
법인(주민) 등록 번호	131411-0190175		
국적 또는 소속국가명	대한민국	등록일자	2021.06.21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.

2021년 6월 21일

경 기 도 지 사